

自律化와 企業의 자세



姜信逸

<漢城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 目 次 ■

1. 序
2. 自律화와 작은 政府
3. 企業의 자세

1. 序

80년말부터 어려워 지기 시작한 우리경제는 9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국제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무역전쟁에서 기술전쟁으로 바뀌고 있다. 산업발전의 주체인 기업인들은 투자의욕이 나지않고 수출은 더욱 어려워지며 기업가 정신과 근로자의식도 실종되어 있는 상태다. 정부의 경제정책도 순수 경제논리보다는 정치적인 영향권에 들어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러한 90년초의 경제 사회진단은 지난 30여년간 지속되어 온 정부 주도 경제의 구조적 결함이 그 요인으로 보인다. 최근에 들어 “신한국 건설”이라는 새로운 마스터플랜이 만들어 지고 있다. 종래의 성장등 외형을 중시하는 계획에서 경제주체들의 구조적인 측면이 강조되었고 과거 보다는 비교적 많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회적인 합의점에 모아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이 현재 마련되어지고 있는 것 같다.

신경제계획은 아직도 정부 계획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다. 이제는 정부와民間의 역할분담, 시장원리의 준수등에 대한 기본철학에 강조가 필요 하고 이에대한 실천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향후 경제정책의 기본철학으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유경쟁의 존속이라 볼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사유재산제도의 인정이 주요한 구조적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사유재산제도의 인정은 정부에 의해 결정되며 효율적 결정이 기업의 이윤추구 등에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資本主義經濟下에서 기업과 정부의 관계정립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市場經濟를 지향하게 되면 市場原理에 입각한 자유경쟁을 채택하여야 하며 자유경쟁은 사유재산과 이윤추구를 위한 기본원칙이 된다.

정부의 기능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강하여 오히려 自由競爭이 어렵고 사유재산의 인정 및 보호가 되지 못한다면 기업 및 민간의 활력은 저하되며 나아가 경제성장의 저해가 될 수 있다. 政府의 役割은, 첫째로 市場내에서 rule의 管理者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둘째로 市場機構로 해결될 수 없을 때 즉 “市場失敗”에 대해 보완조정조치를 하면 된다. 만일 정부의 행동이 반드시 合理的이 된다고 볼 수 없게 되고 사회적 순편익을 최대화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면 정부의 기능축소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행정기능정비, 행정규제완화, 민영화를 통한 정부기능 및 규모축소와 세제개혁, 및 금융개혁 등을 통한 시장기능활성화가 향후 계획의 중심이 되어야한다. 한편 정부의 기능정비 축소는 민간에 대한 자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이에따라 민간(기업)의 새로운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과거의 정부보호속에서 安住하며 기술혁신이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았던 기업자세는 더 이상 자율화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이 어렵다. 本稿에서는 정부규제완화 등 자율화 또는 작은정부의 의미와 추세를 살펴보고 자율화에 따른 기업의 자세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2. 자율화와 작은 정부

제2차 대전후 개발도상국가 뿐만 아니라 선진국가에서도 經濟復興 또는 정치적 이유로 政府役割이 증대되고, 기업에 대한 規制가 強化되고, 공기업형태에 의한 운영이 증대되었다. 정부의 과다한 역할에 대한 經濟的 非效率性論爭은 계속 있었지만 대부분 정치이념적인 이유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중요시되어 왔다.

그러나 1·2차 oil shock와 1980년초반 세계경제의 不況은 정부주도로 경제를 이끄는데 재정적 및 효율적으로 한계에 도달하여 각 국가로 하여금

政府主導의 經濟體制에서 民間主導의 經濟體制로의 轉換을 모색함으로써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關係再定立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민간기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고, 정부는 민간기업들의 경쟁시장조성과 과거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생산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社會衡平性을 위한 準則을 마련하는 “작은 정부의 출현”과 “자율화” 물결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80년이후 세계적인 자율화추세에 따라 정부역할에 대한 調整必要性을 갖게 되고, 정부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정치사회의 민주화 요청과 함께, 경제사회적 正義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정책문제들로 인하여 정부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즉, 環境, 產業災害 및 職業病에 대한 획기적인 對策이 요구되고 있고, 消費者保護, 그리고 노인, 불우아동, 장애자등 經濟社會的 弱者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추진으로 지방에서의 복지 및 경제사회 행정수요도 급팽창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보호무역추세속에서 성장세의 駁화 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경제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역할이 또 다시 정부에 지워지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각종 社會間接資本施設의 擴充은 물론이고, 낙후된 技術開發能力의 培養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확대일로에 있는 통상마찰에 대처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농업부문 등 경제산업구조의 조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서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나라와 달리 오히려 향후 큰정부의 가능성성이 다분히 있다. 작은 정부의 논의는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政府組織 및 정부인력規模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작은 편에 속한다. 1985년의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은 14명, 일본은 23명, 대만은 43명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62명이다.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政府支出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아도 1988년 현재 미국은 36.1%, 일본은 32.2%, 스웨덴은 59.5%에 달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20.3%에 불과하다. 租稅負擔率도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지금, 공기업을 포함하여 공공부문의 예산대비 GDP 규모는 국가사회주의라고 불리어지는 프랑스보다 높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경제적 규모는 대단히 큰 편이다.

이러한 통계수치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이나 기업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정부의 영향력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데 있다. 이것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정부규제가 만연되어 있고, 市場經濟에 대한 政府干渉이 깊숙하고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정부가 때로는 無所不爲의 存在로, 때로는 강압적인 존재로, 때로는 귀찮고 거북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작은 정부”를 논하면서 政府規模보다는 政府機能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의 외형적 크기 보다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새로운 행정수요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既存 政府活動範圍와 行政機能을 再檢討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민간부문이 상당히 성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정부가 맡지 않아도 될 역할은 당연히 덜어내어 민간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또한 地方自治制를 지향하고 있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일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일에 행정노력과 자원을 소모하지 말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 行政組織의 能率, 公務員 한 사람 한 사람의 生産性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작은 정부”는 정부기능과 민간기능의 합리적 재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합리적인 기능 및 사무의 재배분, 그리고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規制緩和(de-regulation), 民營化(privatization),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의 실현 또는 分權화(decentralization), 政府部門 內部의 生產性向上努力을 필요로 한다.

정부가 거대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또한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대상은 政府規制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정부규제가 만연된 것은 급속한 產業化過程에서 權威主義의이고 行政便宜主義의인 思考方式이 지배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규제란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사회질서의 구현 소위 公共利益을 위하여 민간(개인과 기업)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정부규제는 일정한 행위의 절대금지로부터 시작하여 인허가, 면허, 등록, 지도, 단속, 제도 및 정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각종의 정부개입과 간섭이 이에 포함된다.

政府規制는 국가만이 갖고 있는 強制力에 根據하여 기업과 개인의 활동에 간섭함으로서 기업과 개인의 권리관계, 이해관계 등 재산권에 심대한 과급 효과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정부규제는 민주적인 정책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규제는 대체로 정부의 자의적인 정책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정부규제가 계속되는 限, 市場競爭을 통한公正한 經濟運營, 技術革新 雾靄氣의 擴散, 國際競爭力의 強化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政府規制緩和는 시급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규제완화는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고, 기업들도 여전히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정부에 의존하려 하고

있다.

물론 1980년대 이후 규제완화가 꽤 진척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완화는 進入規制緩和를 통해 企業間競争을 活性化하여 經濟的 效率性을 달성하려는데 있었다. 가격규제등은 존속하고 진입규제완화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으며 또한 진입규제 완화만으로도 규제완화가 또 다른 경제사회적副作用을 놓게 되었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의 무허가공장의 양성화 또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으로 환경오염과 교통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소비자의 권리은 침해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규제완화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아직도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게 많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경제구조가 복잡해지고 있고 민간의 자율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이시점에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 가격규제는 완화 조정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철폐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기존의 규제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익집단의 반발과 저항때문이다. 이들의 세력과 대항할수 있는 반대 이익집단인 소비자의 역할에 대한 응집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시장경쟁의 창달을 위해 경제적 규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종래의 행정편의적인 사전적 규제에서 시장 행위 결과에 대한 분석결과에 기초한 사후적규제로 규제의 시장경쟁적 폐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작은 정부”的 실현을 위하여 주목해야 할 대상은 공기업의 民營化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公的인 영역과 私的인 영역의 구별은 급속하게 모호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적인 업무로 여겨져 오던 영역들이 민간부문으로 移轉되고 있는가 하면, 정부와 민간부문의 보다 긴밀한 협조방식에 의한 공적 업무의 수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요인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민간부문이 정부부문보다 생산성을

훨씬 높가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정부부문의 재원조달능력, 사업수행능력의 한계가 부수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오늘날 공공부문 영역이 민간화되어 가는 方法과 速度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몇몇 州에서 교도소의 운영, 심지어 재판소 운영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놀랄만한 변화들은 현대사회가 한마디로 말해 민간중심의 경제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民營化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민영화라고 하면 흔히 공기업 민영화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오늘날 민영화는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활동영역을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방법, 민간기업이 복지서비스를 생산하게 하고 정부는 수혜자들에게 紙券(vouchers)을 배급하는 방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의 청소업무가 상당부분 민간기업에 위탁운영되고 있는지 오래이다. 주차위반 차량의 관리, 국·공립 학교급식에도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나아가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관리도 민간에게 맡겨나가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民營化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행정이 안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덜어내는 방법이다.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온 공공서비스 가운데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일단 민영화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 민간이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민영화된 정부사무가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정부가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정부가 상품 質調整 등 공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라면 굳이 정부가 그것을 생산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실 민영화는 過負荷 문제를 안고 있는 정부가, 꼭 담당해야만 할 공공서비스의 공급만을 담당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의 양을 증가시키며, 또한 질을 보다 다양화, 고급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서 환영받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업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민영화의 추진배경으로서는 공기업 경영 효율화, 정부수입증대 등의 이유들도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르게 정부소유 주식의 불특정다수 판매를 통한 중산층 육성이 최근 실시된 민영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비효율성의 문제가 심각한 공기업보다는 비교적 양호한 공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증권 시장의 위축으로 1991년 이후 매각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공기업의 효율성만 고려한 종전의 민영화방식에서 탈피하여 향후 해당산업의 발전방향과 지방화 등에 대비한 새방안이 필요하다. 매각방법, 매각후 사후조치 및 매각대상선정등을 다룰 민영화위원회를 만들고 당해 산업의 발전방향도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된다. 가령 한국통신의 경우 민영화와 통신산업발전방안을 동시에 동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

또한 민영화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基金과 公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基金은 관계부처가 경제기획원의 심의, 국회의 승인과 결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금으로서, 관계부처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책목적의 수행을 위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財源”이다. 이러한 편리성 때문에 1969년까지 9개에 불과하던 기금이 91년말 현재 66개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금은 특수 정책 목적수행을 위한 예외적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상화, 보편화되고 있다. 그 결과 財政運營의 民主性, 效率性側面에서 심각

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準公共機關을 설립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다행히 13대 국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基金管理法」이 제정됨으로써 재정 운영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민주적인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방법, 유사기금을 통폐합하는 방법 등 보다 근본적인 면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基金은 위에서 지적한 각종 公團의 설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3개 部·處·廳傘下에 18개 公團이 설치되어 있다. 최근에 고속전철 건설을 이유로 또 하나의 공단이 생겨났다. 기존의 18개 공단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基金의 운용과 관리를 위해 설치된 것이 9개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공무원 연금 등 적립성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설치된 것이 3개, 교통운수사업의 관리주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3개 등으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이를 통해 公團과 基金이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공단은 기금의 관리운영주체이고, 기금은 공단의 사업재원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기금제도가 예산제도 및 재정운영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공단은 행정조직체계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단이라는 성격이 모호한 조직의 설립으로 인하여 官과 民의 구분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행정책임의 귀속이 불분명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공단에 대해서는 그것을 限時的으로 운영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관하는 방법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업무의 집행적 성격 만을 고려하여 무한정하게 공단을 설치해 나가려 하는 잘못된 성향은 再考되어야 한다. 만약 중앙 정부기관

이 담당하기 어려운 업무라고 한다면 그 업무의 일차적인 이관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작은 정부”의 실현방안으로서 규제완화, 민영화 및 정부기금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바로 政府部門 内部의 生産性問題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공급하는 財貨는 경쟁이 되지 않고 計測이 어려워 정부의 생산성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생산성이 대체로 낮다는 것은 일반적 견해이다.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책목표의 투명성과 정부활동의 평가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활동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존 평가기관의 업무조정을 포함한 행정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3. 기업의 자세

경제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근로자, 기업, 정부 3자의 공통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자유경쟁의 활성화를 위해 역기능이 있는 곳은 과감하게 철폐하고 순기능이 있는 곳에서만 부족한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의 기능을 공공재등 특정재화의 생산과 공급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 정부는 직접 생산할 필요가 없이 공공성에 비추어 사회의 표준에 근거한 적절한 공급주체가 되기만하면 된다. 누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정부는 규칙의 관리자로서 존재하여야 한다. 정부활동 영역이 무엇인가라는 전통적인 질문은 陳腐한 것이며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개입방법인 것이다. 시장경쟁에 영향을 끼치는 직접적 개입보다는 간접적 개입이 필요하며 적극적 개입보다는 규칙의 관리자 역할만 유지하는 기능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줄어든다는 것이 곧 기업활동에 있어 서의 자율과 창의성 보장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이러한 상황변화에 무리없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자체능력의 배양이 필요하다.

기업가는 자율의 틀속에서 서로 절제와 자제가 요구된다 하겠다. 시장원리를 준수하는 자유경쟁사회는 「다아원」이 주장한 치열한 適者生存이며 강자가 밀림을 지배하는 弱肉強食법칙이 지배하는 사회로 볼 수 있으나 절제와 자제가 없는 자유경쟁은 자율의 질서를 존속 시킬 수 없게 된다.

정부나 국민이 보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 시킴으로써 새로운 기업과 기업인상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자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에 대한 시각은 사회 경제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최근 수출이 어렵고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기업이 스스로 노력하여 빠른 시일내에 긍정적 기업이미지를 확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종기업간의 과당경쟁은 자원낭비를 가져오고 국제경쟁력의 저해요인이 되는 바 가급적 억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수평적관계로 전향하여 밀림에서 강자와 약자가 서로 각자의 생활권을 유지하며 공존하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협조기능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은 과당경쟁, 불공정거래행위는 자율질서를 무너뜨리고 정부의 기능 확대가 다시 도래하여 정부간섭, 규제 및 정부 직접경영등이 나오게 될 것이다.

기업가는 과거와 같은 근면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공유하는 가치관과 행동규범인 기업문화를 창출하여 조직구성원의 안전성을 확립하여야 된다. 근로자의 목표와 조직목표와 일치할때 “신바람문화”가 창조되고 생산성의倍加는 쉽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기호가 다양화, 유행화 함에 따라 기술개발과 전문화를 통해 수요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다양한 제품을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 곧 소량다품종 시대에 진입하게 되고 앞으로는 유통망 네트워크를 어떻게 조화하여 각 소비자의 욕

구를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서비스 경쟁시대가 온다. 이에따라 종래의 대규모 생산체제에만 익숙한

기업의 경우 다품종소량 생산체제에 따른 마케팅 혁신등 관리혁신도 뒤따라야 한다.

處世，讓一步爲高，退步，即進步的張本。

待人，寬一分是福，利人，實利己的根基。

세상을 살아감에는 한발짝 양보함을 높게 여기거니와, 한걸음 물러나는 것은 곧 스스로 전진하는 토대가 된다.

사람을 대우함에는 일푼 관대함이 복이 되거니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실로 자기를 이롭게 하는 토대가 된다.

- 菜根譚 중에서 -